

## 「My스마트북 통장 특약」(구 외환은행)

1. 개정시행일: 2016. 6. 7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「My스마트북 통장 특약」(구 외환은행)</p>	<p>「My스마트북 통장 특약」(구 외환은행)</p>	
<p>제1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㈜하나은행 (이하 '은행'이라고 한다)과의 "My 스마트북 통장"(구 외환은행) 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 거래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'예금거래 기본약관'(구 외환은행)과 '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'(구 외환은행), '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'(구 외환은행), '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'(구 외환은행)</u>을 적용합니다.</p>	<p>제1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㈜하나은행 (이하 '은행'이라고 한다)과의 "My 스마트북 통장"(구 외환은행) 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 거래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'예금거래 기본약관'과 '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', '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', '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'을 적용합니다.</u></p>	<p>기본약관통일에 따른 용어 정비</p>
<p>제2조 ~제5조 (내용생략)</p>	<p>제2조 ~제5조 (좌동)</p>	
<p>제6조 이율적용 ① 이 예금은 신규일 당일 영업점이나 은행홈페이지에 고시된 저축 예금 이율이 적용됩니다. ② 이자는 매년 3, 6, 9, 12월 넷째주 토요일의 다음날(원가일)에 원금에 <u>더합니다.</u> ③ 이자계산은 <u>최초 예금일(또는 지난 원가일)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 잔액을 평균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</u> <u>가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평균잔액 5천만원 미만</u> <u>나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평균잔액 5천만원 이상</u> ④ 이 예금의 적용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율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자가 적용됩니다.</p>	<p>제6조 이율적용 ① 이 예금은 신규일 당일 영업점이나 은행홈페이지에 고시된 저축 예금 이율이 적용됩니다. ② 이자는 매년 3, 6, 9, 12월 제 3금요일의 다음날(원가일)에 원금에 <u>더합니다.</u> ③ 이자계산은 <u>최초 예금일(또는 직전 원가일)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</u> <u>가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미만</u> <u>나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이상</u> ④ 이 예금의 적용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율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자가 적용됩니다.</p>	<p>원가기준일 및 이자계산 기준 변경</p>
<p>제7조 우대서비스의 제공 ① 이 예금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아래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1. 인터넷뱅킹/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다른은행으로 이체시 수수료 면제. 2. <u>외환은행 CD/ATM</u>을 이용하여 이 예금에서 출금시 수수료 면제. ② 이 예금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, 거래시점 기준 최근 3개월이내</p>	<p>제7조 우대서비스의 제공 ① 이 예금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아래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1. 인터넷뱅킹/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다른은행으로 이체시 수수료 면제. 2. <u>KEB하나은행 CD/ATM</u>을 이용하여 이 예금에서 출금시 수수료 면제. ② 이 예금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, 거래시점 기준 최근 3개월이내 급여</p>	<p>은행명 변경</p> <p>카드실적 인정기준</p>

<p>급여실적<sup>주)</sup>이 있거나 전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사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은행 CD/ATM을 이용하여 이 예금에서 출금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</p> <p>주)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외환은행 급여이체(창구, 인터넷) 및 행입금(지로대량이체, 결제원CMS대량이체, 타행환, 전자금융)</li> <li>→ 입금내역(코드)이 급여(연금)성 자금으로 전산상 자동 인식 되는 경우</li> <li>→ 거래내역이 급여, 상여금, 상여, 월급, 연금, Salary, Bonus, Pay, Payroll의 용어(기업체명 과 혼용시 앞 또는 뒤 위치만 인정, 다른 용어나 다른 위치에 위치시 급여불인정)로 입금되는 경우 · 다만, 외환은행 급여이체시 거래내역에 의한 영업점 창구 입금분은 제외</li> <li>◦ 급여이체 지정일에 입금 → 고객이 지정한 일자 (지정일포함 ± 2 영업일)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</li> </ul> <p>부칙 (제정) 이 특약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</p> <p>부 칙 (1) 이 특약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</p> <p>부 칙(2) 이 특약은 2015년 8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</p>	<p>실적<sup>주)</sup>이 있거나 전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결제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은행 CD/ATM을 이용하여 이 예금에서 출금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(월 10회)</p> <p>주) 급여실적 인정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원화계정)에 입금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 포함된 경우 (적요: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)</li> <li>- 급여일 ± 1영업일에 급여이체 시(급여일 사전등록)</li> </ul> </li> <li>◦ 금액 : 최소 건당 50만원</li> <li>◦ 제외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창구직원에 의한 단말거래(단, 창구거래중 급여 다건입금은 인정)</li> <li>-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(단, 타인에 대한 '이체'거래는 인정)</li> <li>- 가맹점대금, 대출연동, 타발송금 등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는 제외</li> <li>- 본인거래로 추정되는 거래(예시 : 예금주명 적요)</li> </ul> </li> </ul> <p>(삭제)</p>	<p>변경.</p> <p>출금수수료 면제횟수 명시</p> <p>급여실적 인정기준 변경</p> <p>부칙삭제</p>
---	--	---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